



의안번호	제79호
------	------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8. 28.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79호
----------	------

제출연월일 : 2018. 8. 2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원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충청남도과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하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교부, 홍보,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라.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안 제8조~제9조)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 모니터링 실시
-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등

마. 포상(안 제10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포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규제심사: 원안동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2018. 5. 29. ~ 2018. 6. 1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적: 경제정책과(☎ 041-635-3327)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충청남도과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 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

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회적경제과장	이 종 유
	사회적경제팀장	한 정 기
	담 당 자	강 유 석 (746-6013)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발생
- 관련조문: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물품·시설개선사업 등 지원

나. 추계결과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12,954천원
-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3,78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일반회계 시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6,734	16,734	16,734	16,734	16,734	83,670
201-01 사무관리비	12,954	12,954	12,954	12,954	12,954	64,770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12,954	12,954	12,954	12,954	12,954	64,770
301-11 기타보상금	3,780	3,780	3,780	3,780	3,780	18,900
○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	3,780	3,780	3,780	3,780	3,780	18,900
재원 조달	16,734	16,734	16,734	16,734	16,734	83,67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734	16,734	16,734	16,734	83,670
	지방세	16,734	16,734	16,734	16,734	83,67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이 종 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특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1조 목적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000시군구 포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

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군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I 목적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II 지정(평가) 기준

1 가격 기준 (45점)

- 가격 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20점)
* 지역내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10점)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3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 1 평가표 참고

4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5점)

5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8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2점)
* 정부시책 반영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으로 배점조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Ⅲ 지정 절차

- ①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시장·군수)
- ②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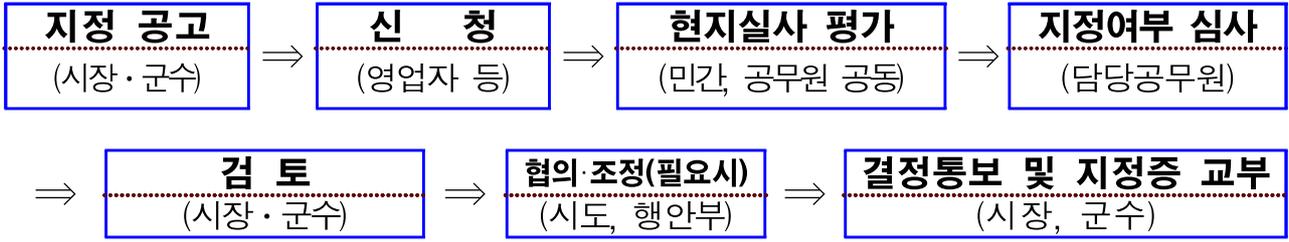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 ③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는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1)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 공무원, 착한가격업소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④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는 현지실사·평가 후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필요시 도와 협의·조정
 -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를 조속히 교부할 것.

< 지정 절차 >



- ⑤ **(등록)** 시장·군수는 지정 후, 해당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IV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

- ① **(지정 업체수)** 해당 시·군 관내 업소의 3% 이내
 ※ 무분별한 지정은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비율을 적성선으로 유지
- ② **(지정 주기)**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매년 6월말 착한가격업소 실태조사 후 일제정비 추진 및 결과보고(道)

V 사후 관리

- ① **(정기 재심사)** 시·군 반기별 실시
-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
- ② **(수시 재심사)** 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지역별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③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 붙임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7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해당 시·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는 변경 소재지 시·군의 기준을 따름

④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VI 착한가격업소 지원 안내

- ①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배제, 보증수수료 0.1p% 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 ~ 3%) 우대
- ②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안부)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우수사례 수집·전파, 재정인센티브, 포상수여 등
 - (기재부)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유공포상에 포함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 (道, 시·군)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시·군 소식지에 우수사례 소개, 道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홍보
 -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발전방안 공유
 - 위생용품 지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 시·군별 차별화된 특수시책 등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참고 4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 점검표 (업소명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현행(배점)	개선	
총 점			100	100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5	20
			평균가격 미만(5~10%)	2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5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25	15
			1년 이상	20	13
		가격동결	1년 미만	15	11
			6개월 미만	10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10
			20%-30%	8	8
10%-20%			5	5	
위생· 청결 기준 (30점)	주영 업 시 설 (10점)	주방 등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5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5	
	매장 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5
품 질 서비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10 중 5 하 -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5	
		일부만 이행	3	3	
		이행사항 없음	0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 점	평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3년이내)	8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참고 5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기지정 업소의 재심사

-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실시
 < 적격여부 심사표 >

분야	세부 점검 기준		적격여부	비고 (사유, 일시 등)
기준 미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업소가격 > 평균가격)		부적격	
	점검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품질·서비스기준 합의 평점이 총 10점 미만		부적격	
폐업	지정 업소가 폐업(단, 업소명 변경은 제외)		부적격	
자진 취소	자진취소 희망 (업주가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격	
기타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부적격	
	행정 처분(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부적격	

- [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 / 지역단위 불문 선정배제](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검색)

○ (유의 사항)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 비외식업의 경우 점검기준 평점확인

-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 道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관리 홈페이지(<http://www.goodprice.go.kr/manage>)